

공사일반시방서

1. 본 공사는 설계도서와 특별시방서 후, 국토해양부 일반시방서 규정에 의거 시공한다.
2.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모든 제품들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시행 중 관련 건축, 전기공사와 적극 협조하여 불안정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자기부담으로 완전 해결하여야 한다.
5.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반드시 감독원의 사용승인에 의해 사용하여야 한다.
6.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 할수 있다.
 - 1) 물량의 증.감 및 현저한 자재단가의 변동시
 - 2)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7. 기타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완전 시공하여야 한다.
8. 공사 시공전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사전협의, 도면확인, 시험굴착, 입회시공 등을 통하여 타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1) 다른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지하매설물 관리부서 직원 입회하에 시험굴착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사진 촬영하여 조사표 정리.
 - 2) 시험굴착(횡단줄파기)은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간격은 50m 이내로 한다.
9. 관의 절단은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한다.
10. 경사검사는 관거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전 감독관 입회하에 수준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맨홀에는 반드시 인버트를 설치하고 토사, 오니 퇴적을 방지 할 것.
12. 공사전, 중, 후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시 3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13. 시공사는 관 부설후 하수관 부설 전체지역에 대한 CCTV촬영을 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4. 맨홀뚜껑 및 받침은 서울시 마크가 표시된 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15. 관의 연결부는 가능한 분기관을 사용하고,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여 연결토록하고, 연결 부는 모르터를 철저히 다져 넣거나 수지로 접합시켜, 수밀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6. 맨홀간격은 50M로, 빗물받이 간격은 10~30M를 표준으로 한다.